



제326회 임시회

2014.01.21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##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4년 01월 08일

○ 회부일자: 2014년 01월 09일

### 3. 제안이유

「학교체육 진흥법」의 제정(2013.1.27.시행)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“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”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“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”과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“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사항”, 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 1호와 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호에 따른 “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탁단체 선정”과 “학생건강체력 평가 위탁단체 선정” 등을 정함(안 제2조)
- 나.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수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, 임기, 위원장의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부터 제5조)

다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, 제7조)

라. 기타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, 제12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학교체육진흥법」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총 14개의 조문을 제정하는 것임.
- 제2조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으로 ① 주요 정책사항, ② 법 제6조제1항에 명시한 학교장의 학교체육진흥의 조치 등 10개 사항, ③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(법 시행령 제5조제1호) ④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나 법 제6조제1항에 명시한 학교체육진흥의 조치 등 10개 사항은 학교장의 기본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제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2명 위촉직 위원은 1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위촉직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「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」(법률 제12080호, 2014. 2.14.시행) 제15조에 따라 한쪽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원구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두어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

고, 제6조에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두어 불공정한 심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신뢰행정 구축에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제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,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며,
-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, 회의, 서면심의, 의견청취 등 제반 조문은 별다른 이견 없음.

## 관계 법령 발췌

□ 학교체육 진흥법 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]

제6조(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
  2.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
  3.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
  4.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
  5.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
  6.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
  7.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
  8.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
  9.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
  10.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)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, 시·도 및 시·도교육청과 시·군·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13.3.23.] [대통령령 제24423호, 2013.3.23.]

**제5조(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)**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

**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## □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3.23] [교육부령 제1호, 2013.3.23.]

**제4조(체력평가의 위탁)**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,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
2.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

## □ 여성발전 기본법

[시행 2014.2.14.] [법률 제12080호, 2013.8.13., 일부개정]

**제15조(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